

붙임 1

채용시험 가점사항

구분	세부내용	적용단계	제출서류	가산비율
취업 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각 전형 단계	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	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
장애인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	서류전형	장애인증명서	만점의 2%
정부 권장 정책에 해당 하는 경우	-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) -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 -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 ※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해당됨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가족 「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인자 중 출산,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	서류전형	인턴수료증* 주민등록초본 졸업(예정) 증명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	만점의 2%

* 경력증명서로 대체가능하며, 반드시 청년인턴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.
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
-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.